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발 의 자 : 도정태의원외6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며,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법령 명에 낫표 표시(안 제1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지방공기업법, 공무원여비규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 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성주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성주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위 촉 장

○ ○ ○

성주군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장 ㊞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80,000원
여 비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 의원에 대한 여비 상당액